

의안번호	2213653
의 퇴 인	오기형 의원
회 답 일	2025. 11. 7.
추 계 번호	25F56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처분손익 익금 및 손금 제외 등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하면 2027년 1조 1,380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5조 6,898억원(연평균 1조 1,38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 불산입 (안 제17조 제1항)	11,380	11,380	11,380	11,380	11,380	56,898	11,380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안 제20조)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 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익의 배당금 의제 명시 -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외	
2	안 제17조 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자기주식 처분 이익의 익금 제외	
3	안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자기주식 처분 손비의 손금 제외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6조 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 거래소 외 자기주식 취득 거래에 대한 자료 부재 등으로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2	안 제17조 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3	안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징수 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계
 - 징수기준에 따르면 2026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
- 자기주식 처분손익 익금 및 손금 제외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안 제17조 제1항, 안 제20조)
 - 향후 내국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이 2024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가정
 - 중소기업과 일반법인 각각의 실효세율 및 법인세 납부 비중이 유지된다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1)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처분손실 현황

- 2024년 기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11조 9,782억원,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1조 1,924억원 수준
 - 일반법인과 중소기업으로 나누면, 2024년 신고된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89%, 처분손실의 50%는 일반법인에서 발생
- 2024년 기준 자기주식 처분 순이익은 10조 7,858억원 수준
 - ※자기주식 처분 순이익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에서 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
 - 일반법인과 중소기업으로 나누면, 2024년 신고된 자기주식 처분순이익의 93%가 일반법인에서 발생

[표 2] 자기주식 처분손익 현황: 2024년 신고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자기주식 처분이익 (A)	자기주식 처분손실 (B)	자기주식 처분 순이익 (C=A-B)
일반법인	106,406	5,997	100,408
중소기업	13,377	5,927	7,450
합계	119,782	11,924	107,858

자료: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4년 법인세 납부비중은 일반법인이 55.3%, 중소기업이 47.6% 수준이며, 실효세율은 일반법인(19.6%)이 중소기업(14.0%) 보다 소폭 높음

[표 3] 법인세 신고현황: 2024년 신고기준

(단위: 개, 억원, %)

구분	신고법인수(A)	납부법인수(B)	납부비중(B/A)	과세표준(C)	총부담세액(D)	실효세율(D/C)
일반법인	66,224	36,628	55.3	3,116,459	609,636	19.6
중소기업	964,736	459,291	47.6	1,474,198	206,346	14
합계	1,030,960	495,919		4,590,657	815,982	

자료: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자기주식 처분손익 익금 및 손금 제외에 따른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 현황과 익금 및 손금 제외의 세수효과는 [표 2]의 2024년 신고기준 자기주식 처분 순이익 수준, [표 3]의 법인세 실효세율 및 납부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여 추계

[표 4] 익금 및 손금 제외의 세수효과 추정치

(단위: 억원, %)

구분	자기주식 처분이익(A)	자기주식 처분손실(B)	자기주식 처분 순이익(C=A-B)	납부비중(D)	실효세율(E)	세수효과(C×D×E)
일반법인	106,406	5,997	100,408	55.3	19.6	10,883
중소기업	13,377	5,927	7,450	47.6	14.0	496
합계	119,782	11,924	107,858			11,380

자료: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하면 2027년 1조 1,380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5조 6,898억원(연평균 1조 1,38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 불산입 (안 제17조 제1항)	11,380	11,380	11,380	11,380	11,380	56,898	11,380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안 제20조)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